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22327
결재일자	2016.6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인사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	
이지혜	서경택	홍동석	代홍동석	06/23 김병환	
협 조					
	예산담당		고영용		

2016년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계획



2016. 6.

행 정 국
행 정 지원 과

2016년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계획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5 제3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연 2회 나누어 지급하고자 함

I 관 련 근 거
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(연가보상비)
-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)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

II 운 영 개 요

- 지급 대상 :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- 지급제외자
 - 구청장
 -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8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·제4호·제5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
 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공무원
- 내 용 : 상반기(06.30일 기준), 하반기(12.31일 기준)로 나누어 연가보상비 2회 분할 지급

- ① **상반기** : 06.30일 현재,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 선 지급
- ② **하반기** : 12.31일 현재, 개인별 미 사용한 연가일수 보상액에서 상반기 받은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지급

■ 연가보상비 산출방법

- ① **상반기** : 06.30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$86\% \times 1/30 \times 5$ 일
- ② **하반기** : $(12.31일\ 현재의\ 월\ 봉급액의\ 86\% \times 1/30 \times 연가보상일수)$
- 상반기 지급받은 연가보상비

- 1. 연가보상일수(20일 이내) = $\frac{\text{미사용연가일수} \times 12\text{개월} - \text{제외기간(개월)}}{12\text{개월}}$
- 2.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, 임기제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 및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'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'과 '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' 참고

■ 지급기관 :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기관

■ 지급시기 : 상반기 07월 15일, 하반기 12월말

III 지 급 계 획

■ 지급 기준일 : 2016.06.30.일 현재

■ 선지급 일수 : 5일

■ 지 급 일 : 2016.07.15.(금)

■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

- [1차] 0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선지급

지급액수 계산식

6월 30일 현재 지급기준액* × 5일

* 지급기준액 =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% × 1/30

[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 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(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)의 78%(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%)로 한다.]

- [2차]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에서 상반기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또는 환수

■ 연가보상비 상반기 선지급 예외대상자 지정·운영

- 목적 : 연말 연가보상비 정산,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를 사전 지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
- 지정 대상 및 순서

6.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

- ① 6.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(필수)
 - ② 6.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근거에 파견중인 자
 - ③ 하반기(7.1 ~ 12.31) 중 퇴직 예정자
 - ④ 하반기(7.1 ~ 12.31) 중 휴직 예정자
 - ⑤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
 - ⑥ 그 밖에 상반기 선 지급으로 연말에 연가보상비 정산,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)
- ※ 분할지급이 원칙이므로, 급여담당의 행정편의 및 신청자의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불가

- 지급방법 : 선 지급예외대상자는 12.31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
- 예외지정 대상자 관리 : 각 부서(동)별 예외 대상자 명단 및 지정사유 등 내부방침으로 관리 보관

IV

행정사항

■ 연말, 연가보상비 환수조치 대상자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공지 철저

-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 지급 대상자들에게 12.31일 기준 미사용 연가일수를 5일 이상 남겨놓도록 사전 공지

■ 기타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

- 붙임 : 1.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연가보상비) 1부
2.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연가보상부) 1부
3.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부. 끝.